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3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김도읍・구자근・김성원

김정재 · 양금희 · 유경준

이명수 · 최춘식 · 태영호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순환자원 이용 장려홍보·교육,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가산금의 교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세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자원순환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세입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및 기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부 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법률 제 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 6호"로 한다.

- 5.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6.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 항 제5호는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②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
	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 <u>6</u>
	조에 따라 징수하는 반입수수
	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u> <신 설></u>	6.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
	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항 제5호는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u>5.</u> 제1호부터 <u>제4호</u> 까지의 규정	<u>7.</u> <u>মা6ই</u>
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	
기는 수익금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